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8월 24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8월 25일
4. 상정일자: 2026년 9월 2일

제29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II.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2. 제안이유

가.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은 미래 신산업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허리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17조

나)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다)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 필요성: 기업 발굴, 선정, 사업관리, 컨설팅, 상담 등을 위해 축적된
기업지원사업의 경험과 기업·전문가 네트워크가 있고,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 업무 전반

1) 사업세부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 허리기업 선정

2) 기업 간담회 실시, 허리기업별 전담PM 매칭, 과제 추진현황 점검

3) 사업 추진결과 검토, 지원기업 성과 모니터링 및 성과확산 지원 연계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2027. 2.~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00백만원(시비)

(단위: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800	560	80	160	

사. 적정성 검토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26.8.18.)

아. 위탁구분: 재계약 (수탁기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자. 부서의견: 기업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구미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8조,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예산조치: 2027년도 예산편성 예정

다.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026년 구미시 기업지원과 공공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라. 성과보고서 및 성과평가 결과, 감사결과: 안전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내 허리기업¹⁾을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다수의 기업지원사업 수행 경험과 기업 및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본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기업별 전담 PM 매칭과 현장 점검이 수반되는 사업인 만큼, 단순 행정 지원을 넘어 기업의 실제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밀착 관리가 요구됨.

1) 핵심 소부장 기업에 소재부품·장비 등을 공급하는 중간단계 기업(매출액 50억~500억 규모)

-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선정된 기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성과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병행해야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V. 토 론 요 지: 생 략

VI.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VII. 심 사 결 과: 원안가결